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5
년
6
월
4
일
(수)
·
주
간
제
23
호
·
통
권
제
1
7
3
0
호
·
가
업
승
계
지
원
제
도
안
내
구
독
보
료
3
0
0
0
0
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6/ 4 통권 173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비상장기업 기업승계시 상속법상 주가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측정방법>

개념, 원칙	계산방법, 주의점 등, 관련 근거규정 요약내용
주당가치계산	① 상장사 : 평가기준일 전 2개월 + 후 2개월 = 4개월간의 증가 평균 ② 비상장사(일반) : 주당순손익 3년 평균가치×60% + 주당 순자산가치×40%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 일반 원칙	법인의 자산가치의 법정 평가액 - 부채 = 순자산가액(≥0, 최소 0)
2. 재고자산 등	시가, 장부가액
3. 예금·채권 등	① 예금 등은 예입액 + 기간이자미수수익 ② 국공채 등 채권·유가증권의 시세(평가액)
4. 부동산 등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법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부동산 법정평가액 규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 가표준액, 아파트·대단위 상가 등은 국세청 일괄공시가격 등)
5. 무형자산 등	선급비용과 무형자산은 차감함(없앴)
6. 권리확정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자산에 가산·합산함
7. 준비금·충당금	부채금액에서 제외(부채로 포함안됨)함 (단, 비용 확정된 충당금과 책임준비금 등은 부채로 반영함)
8. 영업권 금액	초과이익력 있는 영업권가액은 자산에 가산함(청산등 부실영업권은 제외)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중견·중소기업 경영자·소유자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기업승계와 상속세·증여세

- 기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조세 지원제도

- 기업상속 공제제도
- 기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배제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1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	2
2 상속세 과세제도	2
3 증여세 과세제도	3
4 세액의 계산	4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5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6

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I 기업상속공제 제도	11
1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12
2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17
3 기업상속공제 금액	18
4 기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19
5 기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19
6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22
II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2
1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24
2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25
3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26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26
5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28
III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29
1 연부연납제도	29
2 연부연납 신청요건	29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29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30
5 연부연납의 취소	31
6 기업상속의 연부연납	32
7 연부연납 가산금	33
IV 기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34
1 납부유예제도	34
2 납부유예신청 요건	34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35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36
5 납부유예의 취소	39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40

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40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42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43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45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46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46
2 주식 등 할증평가	46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특례	47

◇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2025. 5

제1장 -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납부 기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라.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는 증여 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① 또는 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기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음.

4 세액의 계산

-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 등
 · (채무 등)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 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가.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나.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만 물납가능)

- (요건) ①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할 것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④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합니다.
-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가.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연 8.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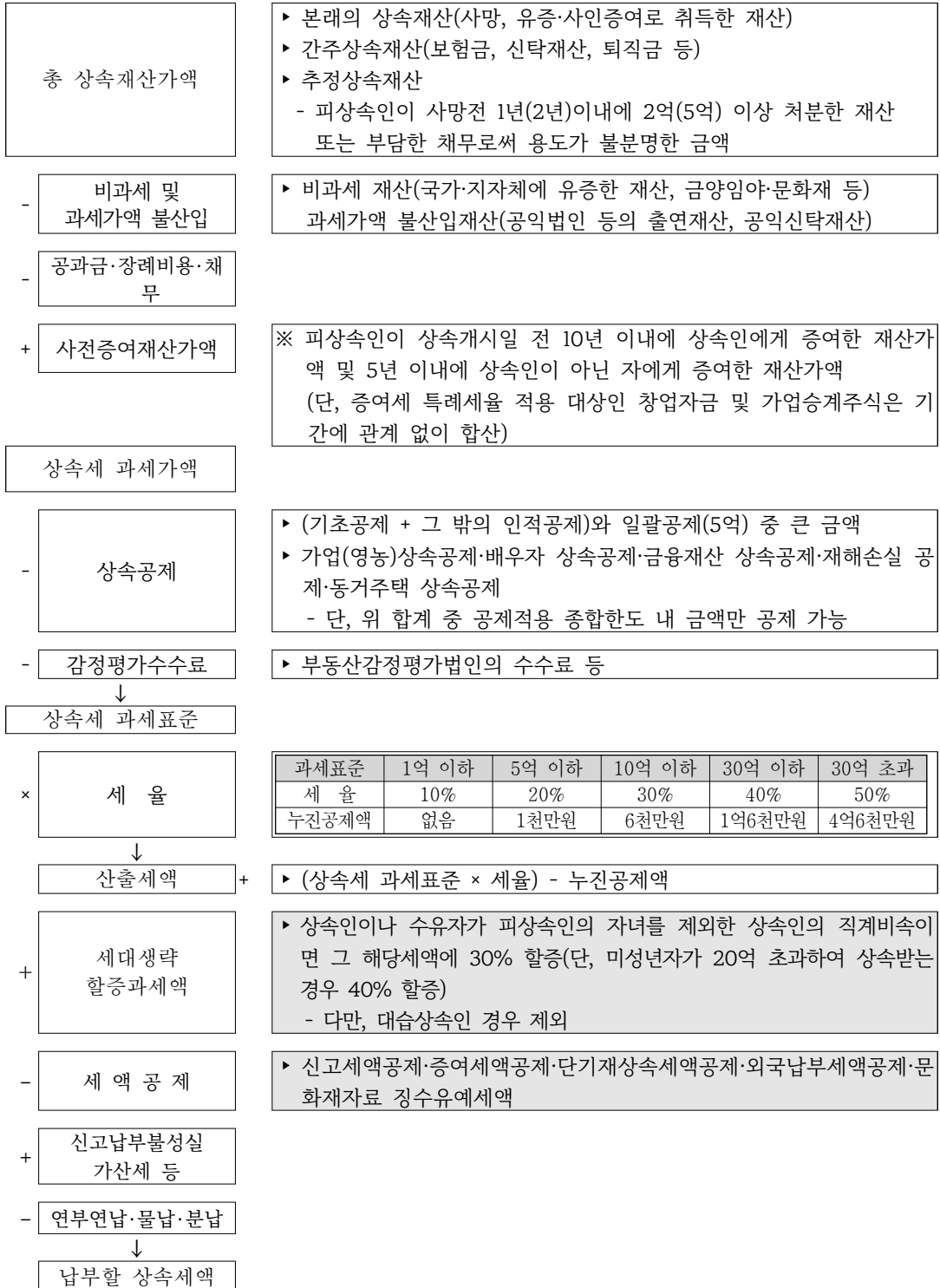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2/10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제외)

상속세 계산 흐름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⑦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

공제의 종류	상속공제액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 600억원* 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 30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20)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 일괄공제 (상증법 §21)	일괄공제액 : MAX (㉗, ㉘) ㉗ 5억원 ㉘ (기초공제 2억원 + 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 배우자상속공제 (상증법 §19)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 (㉗, ㉘) ㉗ MIN (㉙, ㉚) ㉙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비과세·채무 등) ㉚ 공제한도액 : MIN (i, ii) i)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ii) 30억원 ㉘ 5억원 * ㉗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후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증법 §22)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㉗, ㉘) ㉗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㉘ 2억원 ▶ 2천만원 미만시 : 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공제 (상증법 §23)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6억원 한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상증법 §24)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기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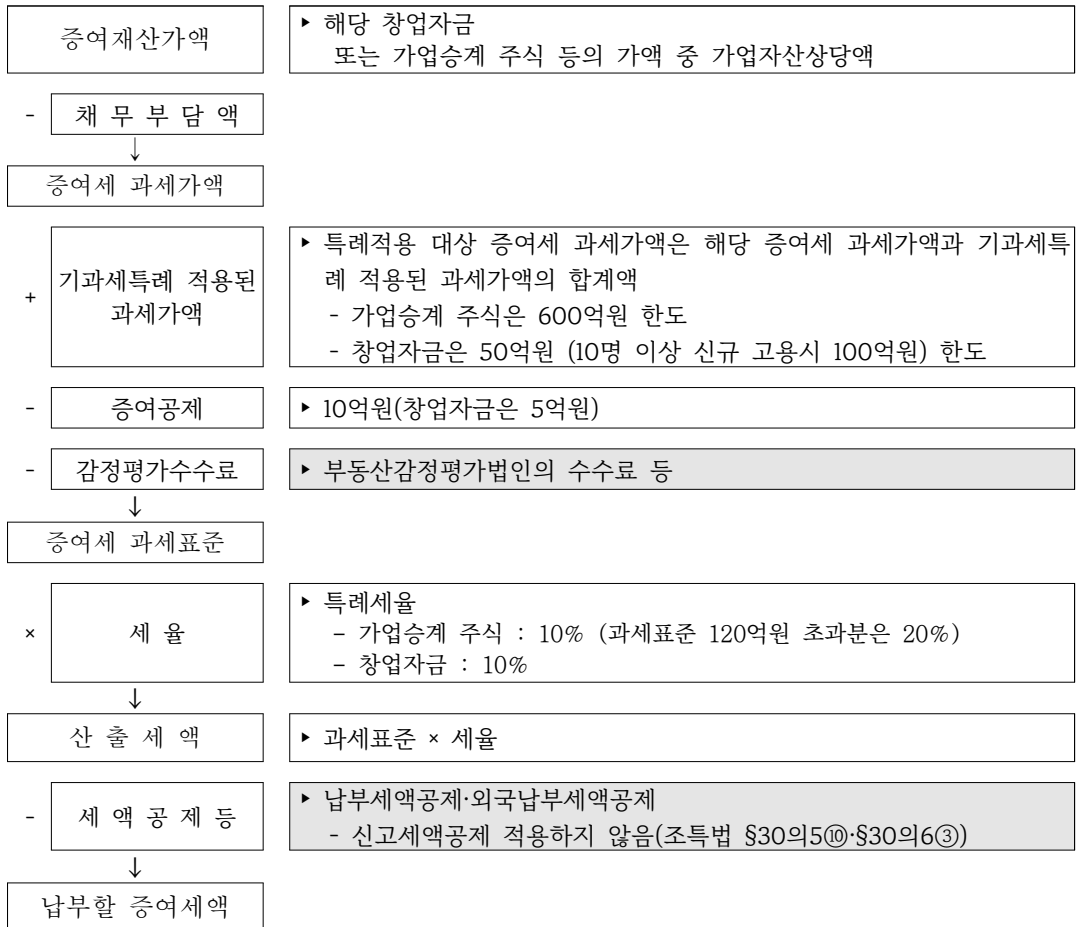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 가산액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증여자</th> <th>배우자</th> <th>직계비속</th> <th>직계존속</th> <th>기타친족*</th> </tr> <tr> <td>공제한도액</td> <td>6억원</td> <td>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시 2천만원)</td> <td>5천만원</td> <td>1천만원</td> </tr> </table> <p>*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혼인 전후 2년이내 증여재산, 출산 후 2년내 증여재산, 혼인+출산 한도 1억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p>	증여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시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증여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시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증여세 과세표준																			
× 세 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과세표준</th> <th>1억 이하</th> <th>5억 이하</th> <th>10억 이하</th> <th>30억 이하</th> <th>30억 초과</th> </tr> <tr> <td>세 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6천만원</td> <td>4억6천만원</td> </tr> </table>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세대생략 증여시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세대생략 증여시 제외
-	세액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분납	▶ 물납 불가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계산 흐름도(특례세율)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적용



제2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I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25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상증령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상증령 §15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 등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금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사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학자금* · 주택자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공제대상 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공제대상 자산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 제외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p>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p>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p>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p>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p>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p> <p>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p> <p>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p>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p>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p> <p>※ 예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p>※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p>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p>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p> <p>* '19. 1. 1.부터 시행</p>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중소기업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9④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다. 상속인 요건 충족

-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거주자 요건 없음(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함)
-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15③2)
 - ※ 다만, 상증령 §15③2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2016.10.25.)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기업상속재산가액】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3 기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기업상속공제 한도

○ 기업상속공제액은 기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기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 제 금 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기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기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기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 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3.1%* / 365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다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다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몰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몰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6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기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 기업상속공제 적용률 : [기업상속공제금액 ÷ 기업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기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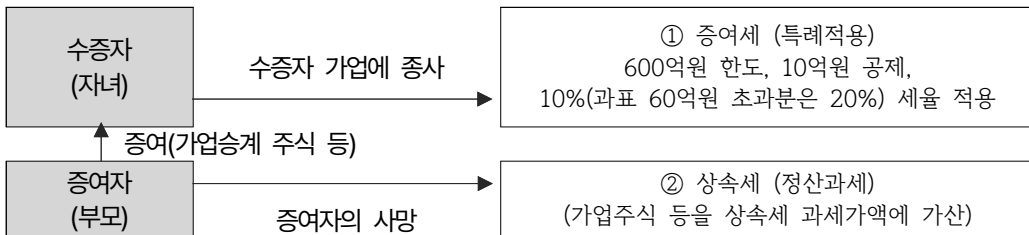
나.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정세액 조정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II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25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조특령 §27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최대주주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장기업은 20%이상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상증령 §15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 등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단서 신설> ○ 대여금 <단서 신설> ○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사택** 제외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학자금* · 주택자금** 제외 *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 과다보유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06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06억원

$$\text{증여세 산출세액}(106\text{억원}) = [(600\text{억}-130\text{억원}) \times 20\%] + [(130\text{억원}-10\text{억원}) \times 10\%]$$

* 기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80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1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株式이 적용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 ② 기업株式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 ① 기업株式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 ② 기업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③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株式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株式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인 100분의 20) 이상의株式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일반적인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세 율	10~50%	10~20%(600억원 한도)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상속재산 가산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p57 계산사례참조)

-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기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

(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 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가 업 상 속 승 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10% 12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 후 관 리	기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15년 적용

III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

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 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 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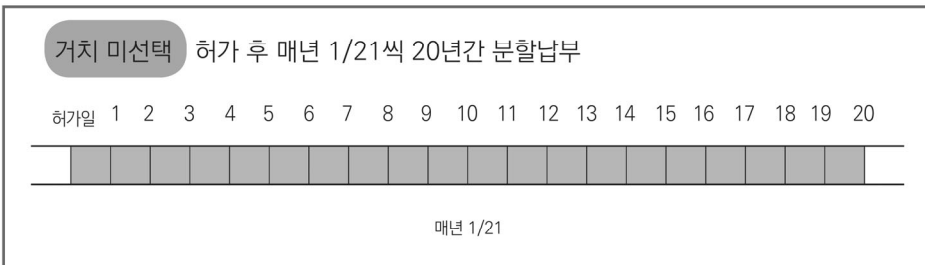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상징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6 기업상속의 연부연납

기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증여분	'23.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기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기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5년 적용)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다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 총세액} \times \frac{\text{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text{총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left[\text{연부연납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right] \times \frac{\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text{총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③ '23.3.20.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24.3.31.납기 연부연납 가산금(1.2% → 2.9%)

$$\left[\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2.4.1. ~ '23.3.19.까지 일수}}{365} \times 1.2\% \right] + \left[\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3.3.20. ~ '23.3.31.까지 일수}}{365} \times 2.9\% \right] + \left[\text{연부연납 잔여세액} \times \frac{\text{'24.3.22. ~ '24.3.31.까지 일수}}{365} \times 3.5\% \right]$$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IV 기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기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제도는 기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기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기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 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기업상속공제 준용)

-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기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기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기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장권 설정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

1)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기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
 -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frac{\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text{365}} \times \frac{3.5\%*}{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①)

-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②)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frac{\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365} \times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㉔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㉕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㉖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 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㉗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 상당액

$$\text{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가업자산(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1\%^*}{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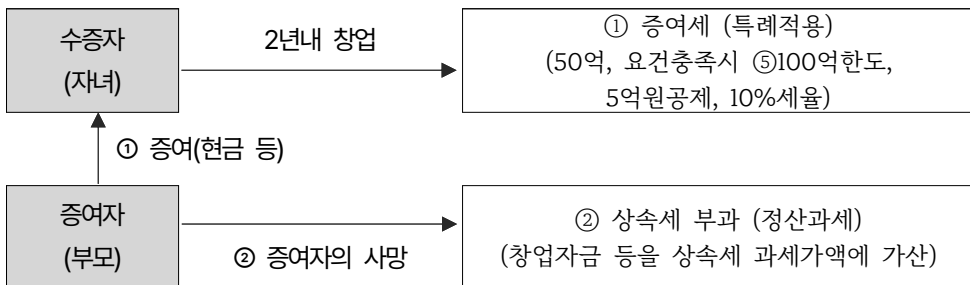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장 -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의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10%(20%)
사후 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 * '24.2.29. 이후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을 말합니다.

-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4일 (금)	5월 27일 (월)	5월 28일 (화)	5월 29일 (수)	5월 30일 (목)
미 달 러 (USD)	1364.50	1370.00	1365.40	1359.50	1364.80
일 본 엔 (JPY)	869.14	873.42	870.10	864.71	865.63
영 국 파 운 드 (GBP)	1732.30	1745.38	1743.62	1734.59	1732.89
캐 나 다 달 러 (CAD)	993.77	1002.49	1001.69	996.23	994.72
홍 콩 달 러 (HKD)	174.74	175.37	174.89	174.05	174.66
위 안 화 (CNH)	187.91	188.82	188.15	187.21	187.77
유 로 화 (EUR)	1475.43	1486.31	1482.76	1475.81	1474.05
호 주 달 러 (AUD)	901.25	908.17	908.88	904.00	901.79
싱 가 폴 달 러 (SGD)	1009.47	1015.04	1012.19	1008.08	1009.2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0.04	290.78	290.70	289.64	290.17